2016.10.14.(금) ~ 10.24.(월) / 11일간

제28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



장 성 군 의 회

목 차

1.	장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	4
2.	쌀값 폭락 안정대책 촉구 결의안	4
3.	장성군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	5
4.	장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6
5.	장성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…	7
6.	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7
7.	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…	8

심 사 결 과

의 안 명	심사 결과
O 장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	원안 가결
O 쌀값 폭락 안정대책 촉구 결의안	11
O 장성군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	"
O 장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"
O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"
O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"
O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	"
O 장성 편백 힐링 특구 계획안 의견 청취	"
O 2016년도 제3회 세입·세출 추가경정예산안	11

주 요 내 용

1. 장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

■ 발의일자 : 2016. 10. 06.

■ **발** 의 자 : 임동섭, 김옥 의원

■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84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2016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함.

■ 주요내용

- 출석요구일시 : 2016. 10. 18.(10:00) ~ 2016. 10. 19.(24:00)

- 출 석 범 위 : 군수 및『장성군 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』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

- 출 석 장 소 : 장성군의회 본회의장

■ 법적근거

-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

- 장성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

-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

■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1차 본회의 / 2016. 10. 14.)

2. 쌀값 폭락 안정대책 촉구 결의안

■ 제안일자 : 2016. 10. 11.

■ 제 출 자 : 장성군의회 고재진 의원 외 7명

■ 주요내용

- 그동안 경제성장을 위해 희생해 온 농업과, 농촌 그리고 농민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며,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농업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것임
- 정부는 쌀 산업을 살리기 위한 명확한 의지와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함
- 정부에 공공비축미 매입물량 100만 톤 이상 확대, 쌀 재고 물량 소비를 위한 대책 마련, 쌀 가공산업 활성화 및 수급안정종합대책 수립 등 촉구 건의
- 결 의 문 : 【붙임1】 참조
- **의결결과** : 원안가결(제1차 본회의 / 2016. 10. 14.)

3. 장성군 출자 ·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

■ 발의일자 : 2016. 10. 06.

■ 제 출 자 : 장 성 군 수

■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출자·출연 기관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코자 함

■ 주요내용

- 출자・출연 기관의 정의(안 제1조~제3조)
- ·조례가 적용되는 출자·출연기관에 대한 정의 및 운용에 관한 사항
- 출자·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(안 제4조~제5조)
- ·출자·출연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

위해 설치

- 위원회 구성은 당연직, 위촉직으로 15명 이내로 구성
-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(안 제6조 ~ 제9조)
- •성과계약 체결과 지도:감독에 관한 사항
- 경영실적 평가 등(안 제10조 ~ 제15조)
- •실적평가 내용, 경영평가단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
- 법적근거 :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5차 본회의 / 2016. 10. 24.)

4. 장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■ 발의일자 : 2016. 10. 06.

■ 제 출 자 : 장 성 군 수

■ 제안이유

- 자치법규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불합치·기능상 실 자치법규에 대한 체계적 정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일괄 정비

■ 주요내용

- 약칭 조문 변경(제1조 및 제2조)
- •제1조 목적조항에서 약칭조문 삭제 및 제2조 해당 법령명 명시
- 법률에 근거 없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한 조항 삭제(제6조 및 별 지 제5호서식)
- 채권자에게 채무액·이자·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해 분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법률에 근거 없이 사인에 일정한 의무를 부과한 조항으로 삭제

■ 법적근거: 「지방재정법」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

■ **의결결과** : 원안가결(제5차 본회의 / 2016. 10. 24.)

5. 장성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■ 발의일자 : 2016. 10. 06.

■ 제 출 자 : 장 성 군 수

■ 제안이유

- 상위법인「통합방위법시행령」이 개정되어 시·군·구 통합방위협 의회당연직위원에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추가됨에 따라,
-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우리군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고자 관련 조문을 정비코자 함.

■ 주요내용

-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사항(안 제3조제2항)
 - 제9호 광주지방보훈청장 신설

■ **법적근거** : 「통합방위법시행령」개정(대통령령 제25964호, 2015. 1.6.시행)

■ **의결결과** : 원안가결(제5차 본회의 / 2016. 10. 24.)

6.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■ 발의일자 : 2016. 10. 06.

■ 제 출 자 : 장 성 군 수

■ 제안이유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대통령령 제27299, 2016. 6. 30.)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한 조문 정비

- 주민에게 부담을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 편의 증진

■ 주요내용

-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명확화(안 제13조)

• 현행 :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미 반영

·개정: 상환기간(10년 이내) 및 이율(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)

- 경사도 및 임상의 조사 및 산정방식 일원화(안 제20조)

• 현행 : 자치단체 조례로 정함

• 개정 :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조사산정방식 적용

-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65조, 안 제67조, 안 제67조의 2, 안 제68조의 2, 안 제70조)

- ·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관련 안건 처리 기한 명시 및 심의 안건 관련자에 대하여 위원회 제척·회피 기준을 신설하여 도시계획위원회심의 과정의 부패 유발요인 차단
- 용도지역 안에서 행위제한 완화
- 기타 조례 운영상 미비점 보완 개선 등

■ 법적근거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■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5차 본회의 / 2016. 10. 24.)

7.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■ 발의일자 : 2016. 10. 06.

■ 제 출 자 : 장 성 군 수

■ 제안이유

- 2017년 농업인월급제 시행을 위한 근본적 지원제도 마련을 위

한 조문 정비

- 제7조(농업인소득보전 등)에 농업인 월급제 지원 신설

■ 주요내용

- 농업인소득보전 등(제7조) 7호, 8호 신설
- · 7호 : 벼, 과수, 베리류 등 재배농가 농업소득의 안정적인 배분을 위한 농업인 월급제 시행사업
- · 8호 : 그 밖에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농특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
- **법적근거** : 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 한 특별법」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5차 본회의 / 2016. 10. 24.)

8. 장성편백 힐링특구 계획(안) 의견청취

■ 발의일자 : 2016. 10. 06.

■ 제 출 자 : 장 성 군 수

■ 제안이유

- 전국최대 편백 조림 성공지인 축령산, 병풍산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특화된 사업계획으로 농·산촌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장성편백 힐링특구 계획(안)에 대하여,
- 『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』제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장성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

■ 주요내용

- 장성편백 힐링특구 계획(안)

· 공간적 범위 : 장성군 서삼면 모암리 산96번지 외 10필지 (3,225,235㎡)

·시간적 범위 : 2017년 ~ 2021년

■ 법적근거: 「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」제4조

■ **의결결과** : 원안가결(찬성 및 의견제시)(제5차 본회의 / 2016. 10. 24.)

9. 2016년도 제3회 세입·세출 추가경정예산안

■ 발의일자 : 2016. 10. 12.

■ 제 출 자 : 장 성 군 수

■ 심사결과

○ 세 입: 376,949,756천원

- 삭 감 : 해당없음- 증 액 : 해당없음

- 회계별 수정내역

(단위:천원)

	예산요구액		심 사	결 과	
회 계 별			이전해		
		삭감액	증 액	순삭감액	인정액
계	376,949,756	-	-	-	376,949,756
일반회계	359,926,564	-	-	-	359,926,564
특별회계	17,023,192	-	-	-	17,023,192

- 삭감조서 : 해당없음

- 증액조서 : 해당없음

O 세 출: 376,949,756천원

- 삭 감

1) 일반회계 : 해당없음

2) 특별회계 : 해당없음

- 증 액

일반회계 : 해당없음
 특별회계 : 해당없음

- 회계별 수정내역

(단위:천원)

	예산요구액		심 사	결 과	
회계별		,	인 정 액		
		삭 감 액	증 액	순삭감액	[신 경 円
계	376,949,756			-	376,949,756
일반회계	359,926,564	-	_	_	359,926,564
특별회계	17,023,192	-	-	-	17,023,192

- 삭감조서
- 1) 일반회계

(단위:천원)

페이지	예산 과 목	사 업 명	요구액	삭감액	인정액
	계				
		해당없음			

2) 특별회계

(단위:천원)

페이지	예산 과목	사 업 명	요구액	삭감액	인정액
	<u> </u>				
		해당없음			

- 증액조서

1) 일반회계 : 해당없음

2) 특별회계 : 해당없음

■ **의결결과** : 원안가결(제5차 본회의 / 2016. 10. 24.)

【붙임1】

쌀값 폭락 안정대책 촉구 결의문

우리 농심은 유래없는 한여름 더위와 타는 목마름의 가뭄을 견뎌가 며 올해도 풍년이라고 말하고 있지만, 바닥을 모르고 폭락하는 쌀값으로 인해 우리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.

더 우려스러운 점은, 해마다 쌀 재배면적은 감소하지만 생산량은 줄지 않고 있고, 국민 1인당 쌀 소비량 또한 갈수록 감소하고 쌀 수입은 늘어나 재고량은 늘어만 가고 있어, 앞으로 쌀값이 더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점에 있다.

하지만, 정부는 매년 70만톤 이상의 밥쌀 공급과잉이 예측되고 있음에도 오히려 쌀 수입을 늘리는 등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. 이제우리 농민들은 풍년임에도 불구하고 생존권을 위협받는 **절체절명의** 상황에 이르렀다.

우리나라는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그 이면에는 항상 농업과, 농촌 그리고 농민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.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농업과 농민의 한없는 희생을 강요하는 행위는 더 이상은 용납되어서도 안 되고 또 될 수도 없다.

이에 우리 장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에 대하여 쌀 산업을 살리기 위한 **명확한 의지**와 **중장기 계획**을 바탕으로 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 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한다.

- 정부는 공공비축미 수매물량을 100만톤 이상으로 확대하고
 쌀 생산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쌀 소득보전직불금 확대
 등 쌀값 폭락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강구하라.
 - 정부는 밥쌀용 쌀 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창고에 장기간 보 관하고 있는 품질이 낮은 쌀은 사료용으로 전환하는 등 쌀 재고 물량 소비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.
 - 1. 정부는 농민들이 농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쌀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 등 구체적인 수 급안정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하여 시행하라.

2016. 10. 14.

장성군의회 의원 일동